

통일교육원-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화·통일교육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

1 개요


- (목적)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양 기관간의 상호 협력 및 평화·통일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
- (일시 및 장소) ‘20. 9. 28(월) 15:00~15:40 / 통일교육원
- (참석) △통일교육원장, 교육협력부장, 사회통일교육과장, 담당 사무관
△한선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, 곽윤석 본부장, 고운미 팀장

2 진행 및 업무협약 주요내용

- 행사진행
 - 티타임 → 개회 및 참석자 소개 → 인사말씀 → 기관소개 → 협약서 서명 → 기념촬영
- 업무협약 주요내용
 - 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에 평화·통일관련 강좌 개설 등 교육 실시 협력
 - ② 경기도 31개 시·군 평화·통일교육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실시 협력
 - ③ 통일교육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강사 지원·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 운영 협력
 - ④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협력
 - ⑤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 업무에 대한 협력

3 향후 계획

- MOU 체결 후,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화·통일교육 구체적 시행 계획 실무 협의
 - 경기도 31개 시·군의 평화·통일 교육에 대한 수요파악 및 평화·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추진

- ※ 붙임 1. 행사 세부계획
2. 업무협약서 


붙임 1

행사 세부계획

○ 행사진행 계획

시 간		내 용	비 고
15:00~15:10	10분	티타임	* 카페테리아
15:10~15:15	5분	개회 및 참석자 소개	* 교육원 - 경평원(順)
15:15~15:25	5분	인사 말씀	* 교육원 - 경평원(順)
15:25~15:30	10분	기관 소개	* 교육원 - 경평원(順) - 교육원 홍보영상 시청 - 경평원 홍보영상 시청
15:30~15:35	5분	협약서 서명	
15:35~15:40	5분	기념 촬영	

○ 현수막 제작




통일부
통일교육원

통일교육원-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
평화 · 통일교육 업무협약 체결

2020. 9. 28(월) 15시 통일부 통일교육원


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
붙임 2

업무 협약서

통일교육원-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상호협력 협약서

“통일부 통일교육원”과 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”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각각의 설립목적을 공동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아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 시행 시 평화·통일교육 강좌 개설 등 평화·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2.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1개 시·군에서 평화·통일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모집 등에 협력한다.
3. 통일교육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31개 시·군에서 요청할 경우 강사 지원·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.
4. 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.
5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대해 협력한다.

제3조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별도의 의견이 제기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양 기관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동 사업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자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효력 발생일) 동 협약의 효력은 통일교육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2조(협약서의 보관) 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9월 28일

통일부 통일교육원
원장 백준기
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원장 한선재
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-통일교육원 상호협력 협약서

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”과 “통일부 통일교육원”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·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각각의 설립목적을 공동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아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상호 존중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사업 시행 시 평화·통일교육 강좌 개설 등 평화·통일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2.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31개 시·군에서 평화·통일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모집 등에 협력한다.
3. 통일교육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31개 시·군에서 요청할 경우 강사 지원·교육 콘텐츠 제공 등 교육운영에 협력한다.
4. 양 기관은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상호 협력한다.
5.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제반 교육업무에 대해 협력한다.

제3조(비밀유지 의무) 양 기관은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4조(협약기간) 이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별도의 의견이 제기 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. 단, 양 기관간 협의 하에 협약내용을 개정 또는 폐기할 수 있다.

제5조(기타) 동 사업에 필요한 추가사항은 양 기관의 실무자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효력 발생일) 동 협약의 효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통일교육원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2조(협약서의 보관) 동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9월 28일

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
원장 한 선 재

통일부 통일교육원
원장 백 준 기